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의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인 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방사능 방재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보하되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던 안전관리·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로 이관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업무를 안전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의 업무로 이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제6조제2항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전관리·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8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4제2항 본문 중 “대전지역사무소장”을 “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급 또는 4급으로”를 “3급 또는 4급으로, 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로 한다.

별표 1의 한울원전지역사무소란 다음에 서울원전지역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원전지역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	-----------

별표 3 중 총계 “39”를 “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40”으로 하며,
4급 이하 “39”를 “4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안전관리·재난상황의 종합 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 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 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 정	<삭제>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삭제>
제6조(운영지원과) ① (생략)	제6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생략)	5. (중전 제6호와 같음)
<신설>	6. 안전관리·재난상황의 종합 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 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신설>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신 설> 9. (생 략) 제8조(안전정책국) ① (생 략)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u>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원</u> 제12조의4(소장) ① (생 략)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u>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u>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u>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u>	<u>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u> 8. <u>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u> 9.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6.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2조의4(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u>----- -----. ----- ----- ----- 3급 또는 4급으로, <u>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9</u>	<u>40</u>	+1
일반직 계	<u>39</u>	<u>40</u>	+1
4급 이하	<u>39</u>	<u>40</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8